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4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6월 27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안의 안 제4조제3항제1호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교육부에서 지적되었던 세입 재원의 적용 시점(결산 또는 본예산)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,

‘과거 3년 평균 금액’을 ‘직전년도’로 수정하는 사유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추후 보완하여 안전을 재제출할 필요성이 있기에 안 제4조제3항제1호를 삭제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4조제3항제1호를 삭제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 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 용할 수 있다. 다만,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 준 적립금 총액의 50퍼센 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1. 해당 연도 <u>교육비특별 회계</u> 세입재원이 <u>과거 3 년 평균 금액</u>보다 감소하 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</p> <p>2. ~ 4. (생 략)</p>	<p>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보통교부금</u>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」 제11조 제2항에 따른 <u>법정전입금 합계액</u> <u>이 직전년도</u> 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·② (개 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10px 0;">〈삭 제〉</p> <p>2. 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생 략)</p>	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, <u>교육행정국장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⑥ (생략)</p> <p>제11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4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</p>	<p>⑤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 <u>교육정책국장, 교육행정국장, 예산담당관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 -----.</p>	<p>⑤ ----- -----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⑥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1조(존속기한)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제1호 중 “교육행정국장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” 을 “교육정책국장, 교육행정국장, 예산담당관” 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 을 “2029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, <u>교육행정국장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⑥ (생략)</p> <p>제11조(준속기한) 기금의 준속기한은 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	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1. ----- -- <u>교육정책국장, 교육행정국장, 예산담당관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준속기한) --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-----.</p>